계약일: 계약서번호:

시스템 개발 계약서

발주자(갑)

주소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20
출판사명	주식회사 웅진씽크빅
대표이사	이재진

THINKBIG 수행자(을)

거래처 코드	∧
성명(회사명)	회사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MAIL
은행	계좌번호

THÍNKBIG 개발시스템

목적물

THINKBIG 일정

계약 기간

THINKBIG 목적물 공급일

순번	개발 내역	공급일자		
10				
20				
30				
40				
50				
60				
용역 수행내역/유의사항				

\sim
THINK BIG

기타

담보 제공



개발 내역서(1.개요/2.개발 내역/3.개발 산출물/4.기타)



계약금액					
순번	지급 조건 혹은 일자	비중	단위	소계(원)	
10					
20					
30					
40					
50					
60					
특약/추가약정 사항					

계약 내용 2

발주자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하 '간'이라 함)과 위 외주 개발업무 수행자(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개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본건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갑'과 '을' 간의 개발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쌍방이 계약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어의 정의

- 1. '목적물'이라 함은 '갑'이 '을'에게 의뢰한 개발물로서, 위 개발내역서와 같다.
- 2. '개발'이라 함은 '을'이 '갑'에게 제공할 산출물 개발 및 설치와 그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를 총칭한다.

제 3조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위 '계약 기간' 명시일로하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본 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 ② 당사자 간에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으며, 본 계약의 계약조건은 새로 규정된 기간까지 유효하다.
- ③ 계약 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에 따른 용역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4조 개발업무의 내용

- ① '을'이 수행할 개발업무의 범위는 개발내역서에 기재된 업무 및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수반되는 제반 업무로 한다.
- ②'을'은 개발내역서에서 정한 수행 방법 및 일정에 의거하여 개발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 5조 대가의 지급

- ① '을'은 위 '대가 지급 조건'의 일정에 따라 개발 대금을 청구하며, 대가 지급 조건에 따라 '갑'은 '을'에게 개발 대금을 지급한다. 단, '갑'은 '을'이 '갑'과 협의된 일정에 따라 개발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② '갑'의 요청이나 사정의 변경에 의해 개발업무의 범위가 추가 혹은 감소되어 계약금액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 6조 자료제공

- ① '갑'은 '을'의 원활한 개발업무 수행을 위해 '을'이 필요로 하는 제반 자료를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자료 제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추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 ② '갑'이 '을'에게 제공한 자료(사본 포함)에 대하여 '을'은 계약 종료 혹은 해지 즉시 이를 '갑'에게 반납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 7조 사전협의에 대한 의무

'을'은 개발업무 수행 시 전문가의 노력으로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중요사안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중간 산출물을 제출하는 등 '갑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전 협의 시 '을'은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제 8조 시스템의 공급 및 설치, 검수

- ① '을'은 계약기간 내에 위 '목적물 공급일' 또는 개발내역에 명시한 공급일자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갑'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공급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한다. 단, '갑'과 '을'은 합의에 의하여 공급 및 설치 장소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② '을'은 시스템 공급 및 설치 완료 후, '갑'에게 검수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갑'은 검수 확인 요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 근무일 이내에 '개발자'의 입회 하에 검수를 실시하며, '을'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을'이 미완성인 결과물의 검수를 요청한 경우 '갑'은 그 검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의 검수요청은 부존재한 것으로 본다.
- ③ '갑'은 '을'의 본 계약에 따른 수행결과가 본 계약의 이행조건에 합치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을'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 '갑'에게 재검수 확인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갑'은 재검수 확인 요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검수를 실시하며, '을'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갑'이 검수를 통하여 '을'에게 시정요청 사항이 없음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을 검수 완료일로 한다.
- ⑤ '갑'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을'의 검수 요청 또는 재검수 확인 요청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을'의 입회 하에 검수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갑'이 위 각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4 근무일이 되는 날을 검수완료일로 한다.

제 9조 지체상금

- ① '을'의 귀책사유로 개발 및 공급, 설치가 지연되었을 경우, 당사자 간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을'은 '갑'에게 '총 계약금액 × 3/1000 ×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갑'은 이 경우 '을'에게 지급할 대가에서 상계할 수 있다.
- ② 지체의 사유가 '갑과 '을'이 합의한 개발 내용에 대한 '갑'의 변경 요구 등 '갑'의 책임에 의해 초래된 경우에는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며, 공급 및 설치 시기는 상호 합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제 10조 하자 보수

- ① '을'은 본건 검수완료 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 ② 무상 하자보수는 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와 같다.
 - 1. 프로그램 오류에 대한 치유, 복원, 보완 등
 - 2. 프로그램 내 오탈자 등 표기 오류에 대한 수정
 - 3. 웅진 담당자에 대한 기본 교육
- ③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상기 ②항 외에도 무상 하자보수 항목에 포함된다.

제 11조 담보 제공

- ① '을'은 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본 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갑'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갑'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계약금(선급금) 상당액의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를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10조에 따른 하자 보수를 담보하기 위해 총 계약금액의 10% 상당액의 현금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등의 담보를'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갑'이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갑'의 손해액이 '을'이 제공한 담보금액을 초괴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도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 내용 3

제 12조 지적재산권

- ① 본 계약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자료, 기술, know-how 및 기타 지적재산권은 '갑'에게 있다.
- ② 본 계약 개발 수행 과정상의 자료 및 수행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저작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일체의 제반권리는 '갑'에게 원천 귀속된다. '갑'은 필요한 경우 임의로 이를 수정 내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을'이 본 계약 전 보유하고 있던 고유의 개발 기술과 know-how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을'에게 있다.
- ③'갑'은 목적물에 포함된 '을'의 고유한 기술과 know-how를 본 계약에 따른 서비스 목적으로 사용을 중단할 때까지 반영구적, 비독점적, 비배타적인 무상 사용권을 갖는다.
- ④ '을의 개발업무 수행 및 개발 산출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이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을 면책시키고, '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고, '응'이 제3자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3조 비밀유지

- ①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취득한 비밀정보(일체의 서류, 사진, 자기테이프, 전산장비 등 형태를 불문하고 일체의 보고서, 도면, 컴퓨터프로그램, 개인식별정보 등 내용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에 대해 업무상 주의하여 안전하게 보관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제1항의 정보를 포함하여 본 계약의 수행과정 및 목적물과 관련하여 '갑'의 명시적인 승인 없이는 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의 정보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임직원에 한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정보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임직원들과 본 계약에서 정하는 이상의 비밀유지 의무수준 이상의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을'은 '갑' 또는 '갑' 고객의 정보시설 및 데이터의 접근, 사용 시 아래 조항에 동의한다.
 - 1, '을'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만 데이터 처리시설 등을 사용하며,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는다.
 - 2. 업무수행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종 전산장비상에 개인적인 정보나 타 기업정보 및 회사와 관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보관치 않는다.
 - 3. '갑' 또는 '갑'의 고객의 업무용 전자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갑' 또는 '갑'의 고객이 제공하는 메일 시스템을 통해서만 송수신하겠으며 '갑'의 전자메일 사용기준(정보보호기준)에 따른다.
 - 4. 정보자산보호 및 오남용의 방지, 기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을'은 '갑'에게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같은 목적으로 고객이 사전 경고 없이 본 계약서를 근거로 전자메일의 송수신 상태 확인은 물론 전자메일의 내용 등을 수시로 열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한다.
- ⑤ '을'의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은 곧 '을'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며 본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엄격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 ⑥ '을'은 본 계약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본 계약 종료 후 6개월 간 '대교, 교원, 재능, 한솔' 및 그 계열사의 모바일 및 태블릿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없으며, 만약 해당 기간 내에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동의를 득해야한다. 본 사항의 위반 시 위약별로써 총 개발대가의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 ⑦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항을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조 계약의 해제 · 해지

- 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1. 파산,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의 '부실징후기업 관리절차',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 및 해산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 2.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난 경우
 - 3. 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체납처분 또는 이와 유시한 처분을 받는 등 재정적 상태가 악화되어 그 일방에 의하여는 본 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갑'은 '을'이 본 계약의 중요 사안에 해당하는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면 '을'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갑'으로부터 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7 근무일 이내에 그에 합당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갑'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③ '갑'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 대가의 지급을 약정된 지급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체하는 경우, '을'은 별도의 최고 없이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④ '갑'에게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경영사정이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때 그 해지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전까지 통지되어야 한다.
- ⑤ 본 계약이 '갑'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고 '갑'이 해지일까지의 수행자료 내지 수행결과물의 인도를 '을'에게 요청한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의 수행자료 내지 수행결과물을 '갑'에게 인도하고 '갑'은 해지일까지 '을'이 제공한 개발 서비스에 대한 보수(전체 수행결과물 대비 그 완성비율에 따른 대가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별도의 개발대금을 정신하지 아니하며, '을'은 기 지급 받은 착수금이 있다면 즉시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 15조 손해배상

- ①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귀책사유로 인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한다.
- ② 제9조 제1항은 본 조의 손해배상청구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6조 불가항력

- ① 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정부규제 또는 사회통념상 이에 준하는 당사자 일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노사분규 제외)로 인하여 그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전 항의 사유로 계약위반의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어느 일방의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17조 양도 및 하도급의 금지

어느 일방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상 개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 1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제 19조 분쟁의 해결 및 합의관할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관례를 참고하여 상호 합의로써 해결하기로 한다.
- ②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우,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한다.

상기 계약 체결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본 계약서 2부를 작성 후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 1조(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회사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① 수집 항목: 성명, 이명(필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E-mail, 계좌번호, 학력, 자격증

제 2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된 완성품의 제작/개발을 위한 제반 업무 (개발외주업무진행, 대금지급, 저자 관리 시스템 등록 및 활용 등) 및 홍보 마케팅을 위한 강의 및 인터뷰 등
- ② 인세 지급, 계약 미 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법적 조치 등

수집 항목 및 수집 · 이용 동의 여부

성명, 이명(필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번호), E-mail, 계좌번호, 학력, 자격증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제 3조(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본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계약자의 개인정보조회 및 이용에 대한 중지 요청 시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계약자가 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① 보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폰번호), E-mail
- ② 보존 기간: 20년
- ③ 보존 이유: 기본 개인정보 보존을 통한 향후 원활한 출간 활동 목적, 계약 해지 후 재계약을 위한 접촉 목적

제 4조(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계약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달성 또는 동의철회를 하는 경우. 분쇄/소각 등 재생 불가능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합니다.

제 5조(계약자의 열람, 정정, 동의철회 등 권리 및 행사방법)

- 1) 계약자는 계약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담당부서를 통해 언제든지 열람, 정정 또는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당 요청이 있을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조치를 취합니다.
- 2) 회사는 당사자가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 6조(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의무)

- 1) 회사는 계약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계약자에게 다음의 사실을 알리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①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 ②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③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④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 ⑤ 피해 발생 시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2) 단, 유출 확산 방지 등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계약자에게 고지합니다.
- ※ 계약자의 개인정보는 당사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됨을 알려드리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당사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준수하여 귀사가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성명 :

5

1. 사업소득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이러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이다.

-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소득의 예시
- ①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원고료 또는 인세.
- ②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원고료.
- ③ 미술, 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금액.
- ④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 ⑤ 신문, 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
- 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 소득의 7가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일시적으로 창작활동을 함으로써 대가를 얻은 사람에 대한 소득이 기타소득이다.

- 1)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예시
 - ① 문필을 전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신문,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원고료
 - ② 신인 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
 - ③ 일시적으로 행한 강의의 강사료.
 - ④ 사례금.
 - ⑤ 상금, 현상금, 포상금.

3. 소득별 세율

1) 사업소득 : 3,3% (소득세 3,0% + 주민세 0,3%) 2) 기타소득 : 18년 말까지 6,6% (소득세 6% + 주민세 0,6%) 18년 이후부터 8,8% (소득세 8% + 주민세 0,8%)

4. 대가 지급

대가를 지급할 때는 각각 소득세와 주민세 등 법령에 따른 세액을 원천 징수한 후 그 차액을 지급한다.

5. 징수 동의서 확인

계약자는 해당(**사업소득 ♂** 기타소득 □)에 동의하며, 향후 발생되는 불이익은 당사((주)웅진씽크빅)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해당 소득구분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성명: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약정서

6

본인()은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하 "회사"라 함)과의 외주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의무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회사"의 지적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에 직/간접적인 손해를 미칠 수 있는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계약기간 중 및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준수하며, 본 약정서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함에 동의합니다.

- 1. 본인은 다음의 자료, 결과물, 정보가 대외비 또는 비밀 표시의 유무여부 또는 원고, 기획서, 보고서, 회의록, 고객DB, 정보, 기술, 데이터파일, 소프트웨어 등 그 명칭이나 유/무형의 형태를 불문하고 "회사"의 비밀정보임에 동의하며, 계약상 의무에 따라 이를 보호함에 동의합니다.
 - ① "회사" 내부용으로 만들어진 자료로서 작업 중 직/간접적으로 지득 · 취득한 자료나 정보.
 - ② 본인 또는 본인과 제3자("회사" 임직원을 포함)가 협업하여 생성한 결과물이나 정보.
 - ③ "회사" 의 고객에 관한 정보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의 개인정보 포함)
 - ④ "회사"의 연구개발 \cdot 영업 \cdot 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 \cdot 무형의 정보
 - ⑤ 그외 "회사"의 노력으로 축적한 생산/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
- 2. 본인은 비밀정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함에 동의합니다.
 - ① 비밀정보는 암호화 등 안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한 후 사용/관리를 개시하며, 작업 목적외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만들지 않겠습니다. 특히 보관의무가 있는 개인정보가 담긴 서면이나 휴대용 저장장치는 잠금장치가 있는 문서저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 ② 계약기간 중 비밀정보는 "회사"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삭제/폐기하며 비밀정보의 사용/관리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사용/관리했던 비밀정보는 "회사"에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 ③ 계약 중 및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작업목적 외로는 비밀정보를 제3자(업무와 무관한 "회사" 임직원을 포함)에게 유출, 누설, 전송하거나 외부에 공개(개인SNS, 블로그, 웹페이지, 메신저 및 메일 포함.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하지 않겠습니다.
 - ④ 작업목적으로 "회사" 내 통신망을 통해 비밀정보를 발신하는 경우 "회사"의 지정된 절차를 준수하며, "회사"가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회사" 내 통신망을 통해 수/발신 되는 본인의 전자문서를 점검(주요 key-word 검색엔진을 통해 해당 메일을 필터링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함에 동의합니다.
 - ⑤ 개인 휴대용 저장장치를 "회사" 내 반입하지 않으며, 작업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반입한 경우에는 반출 시 반드시 비밀정보를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완전 삭제하겠습니다.
 - ⑥ 각종 작업용 시스템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제3자(회사 임직원 포함)에게 누설하거나 공유하지 않겠습니다.
 - ⑦ "회사" 컴퓨터(노트북, 패드, 휴대용 저장장치 포함)에는 작업과 무관한 개인 자료(사진, 동영상, 음악 등)를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 3. 본인은 본 동의서 서명일 현재 본 동의서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4. 본인은 "회사"가 비밀정보 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자료제출. 인터뷰.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함에 동의합니다.
- 5. 외주용역계약 해약 시 본인은 계약 중에 보유하였던 본 동의서 제 1조의 비밀정보를 포함, "회사"의 영업비밀 등 정보, "회사"의 연구개발ㆍ영업ㆍ재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ㆍ무형의 정보, 기타 "회사"의 주요 영업자산과 관련된 자료 모두를 "회사"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으며, 반납할 수 없는 것은 계약 해지와 함께 즉시 폐기하겠습니다.
- 6. 본인은 본인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이 약정서 위반이 발생된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외주용역계약 내용과 본 약정서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그 서명일자의 선후에 불구하고 본 약정시항이 우선함에 동의합니다.
- 7. 본인은 본인의 고의 내지 과실로 본 약정서 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이며, 본인의 본 약정서 위반과 관련하여 제3자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손해를 배상함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 .

성명 :

청렴서약서 7

본인은 주식회사 웅진씽크빅(이하 "씽크빅"이라 함)과의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인의 고의 내지 과실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가 발견된 경우 씽크빅이 본인과의 본 계약을 별도의 최고 없이 해제 또는 전부/일부 해지하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이 때 본 계약의 해제 또는 전부/일부 해지와 관련하여 본 계약의 내용이 이 서약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그 서명일자의 선후에 불구하고 이 서약서가 우선함에 동의합니다.

- ① 본인이 씽크빅(씽크빅의 모든 임직원을 포함, 이하 같음)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 발견된 경우, 여기서 "부당한 이익"이란 본 계약 외적으로 수수되는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의 제공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때 그 제공 방법(직접수수, 간접수수)이나 제공 시기, 경제적 가치의 대소는 불문함, 다만, 부당한 이익의 제공이 씽크빅 담당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부당한 이익의 제공에 불구하고 본 계약은 그 본래의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또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즉시 씽크빅의 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제보[웅진씽크빅홈페이지 내 제보하기 또는 ☎ (031) 956 7119]한 경우에는 청렴서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 ②제3자와의 담합을 통해 씽크빅과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견된 경우. 이 때 그 담합 방법이나 가담의 정도는 불문함.
- ③ 씽크빅의 담당자가 본인 또는 담당자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것이 발견된 경우. 이 때 씽크빅의 담당자와 본인의 공모 여부는 불문함.
- 2. 본인은 이 서약서 서명일 현재 청렴서약 위반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 3. 본인은 씽크빅이 청렴서약의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인에게 자료제출, 면담, 소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4. 본인은 본인의 청렴서약 위반으로 씽크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이며, 본인의 청렴서약 위반과 관련하여 제3자가 씽크빅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때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5. 본인의 임직원, 대리인, 피용인, 수임인의 고의 내지 과실로 이 서약 위반이 발생된 경우 본인이 우선적으로 이 서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성명 :